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0. 9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생활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송천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최소영 • ☎ (044) 201-3797, 3814	
보 도 일 시		2020년 10월 1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2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

-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
- 정밀안전 점검 미 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중지 조치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(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)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,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.
 -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“사람움직임 감지장치”, “운반기돌출 감지 장치”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·구조물의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.
- 그러나,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%(18,083기 / 40,882기)를 차지하고 있어
 -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.

※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년도 현황

구분	계	5년 이내	5-10년	10-15년	15-20년	20년 이상
기수 (비율)	40,882 (100%)	8,240 (20%)	4,078 (10%)	4,092 (10%)	6,389 (16%)	18,083 (44%)

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.
-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,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,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.
 -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,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”면서,
 - “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,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강준식 사무관(☎ 044-201-38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